

● 제30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347)

2021. 4. 2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2347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시장
- 나. 제안일 : 2021. 4. 2.
- 다. 회부일 : 2021. 4. 6.

2. 제출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출이유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간 갈등·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가 증가 추세에 있어, 예방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의 확대 운영이 필요함.
-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서울에 3개소(남부, 북부, 서부)가 운영 중이며, 이 중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금천~강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이동시간이나 인구 등을 고려할 때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 피해자지원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요청함.

나. 주요내용

1) 시설개요

- 시설명 : 서울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소재지 : 서울시 동부지역
- 설치일 : 2021. 8월

2)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5년 (2021. 8. ~ 2026. 8.)
- 운영사업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인식 개선교육,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
 -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
- '21년 예산액 : 400백만원(국비 200 / 시비 20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3)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서울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배경

-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취약 노인(치매노인, 후기노인 등)과 신체 및 인지기능이 약화된 노인이 증가하고, 고령일수록 가족의 부양부담이 가중되어 학대가능성 상승
- 서울시는 타 시군구에 비해 (노인)인구가 많고, 인구 밀집도 또한 높으며 차량 이동 및 정체가 심해 현재 운영 중인 3개소로는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증설 필요
- 이에,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3개소) 이외에 노인학대예방 사업 수행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증설을 추진하고자 함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 피해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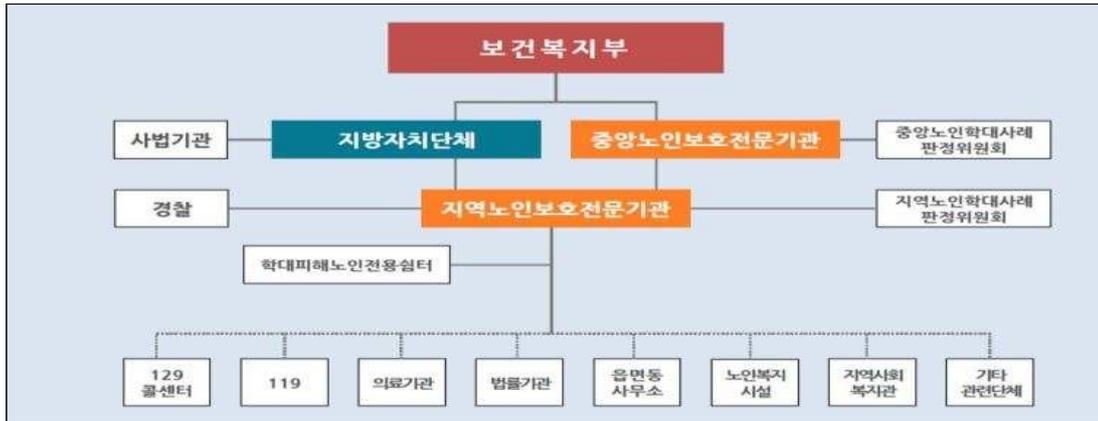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¹⁾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
- 시장이 민간위탁 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 접수, 현장조사
 - 학대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
 -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 노인인식 개선교육,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등
 - 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
-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²⁾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및 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노인학대 예방사업 체계도>



2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및 증설 필요성

가.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서울시에서는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 피해자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3개소(남부, 북부, 서부)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구분	남부	북부	서부
소재지	서초구	강북구	은평구
개소년월	2004.12.	2011.7.	2018.12.19
운영인력	10명 (기관장1,상담원8,교육담당1)	10명 (기관장1,상담원8,교육담당1)	9명 (기관장1,상담원7,교육담당1)
2021년 예산	493,520천원	518,561천원	456,201천원
관할구역	강남지역(9개 자치구) (강남,송파,강동,서초,용산, 영등포,동작,금천,관악)	강북지역(8개 자치구) (강북,도봉,노원,성북,동대문, 중랑,성동,광진)	서부지역(8개 자치구) (은평,서대문,종로,중,마포,양천, 구로,강서)

-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서 권역별로(강남지역, 강북지역, 서부지역) 분할 관리하며 노인학대 대응 및 예방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년에는 2,081건의 학대피해 신고사태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335명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음.

<2020년 노인학대 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실적>3)

- 학대피해 상담 및 신고 현황

상담건수			신고접수건수			사례판정건수				사후 관리 건수
소계	일반 상담	학대 상담	소계	일반 사례	학대 사례	소계	응급	비응급	잠재 사례	
22,484	3,933	18,551	2,081	1,404	677	677	12	444	221	3,726

응 급 사 례 : 즉각적인 의료조치 필요(의료기관 및 일시보호 시설 이용)
비응급사 례 : 피해자 안전이 확보되거나 경미한 피해
잠 재 사 례 : 학대 위험이 내포된 경우(지속적인 모니터링)
일 반 사 례 :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학대 및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예방교육 및 홍보, 사후관리 일정기간 재발여부 확인 등)

- 학대피해 처리 결과

현장조사 및 방문상담(회)			피해자지원(명)			
			일시보호	쉼터이용	의료서비스 이용	
소계	현장조사	방문상담			치료	입원
3,975	674	3,301	45	50	92	1

-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

- 노인학대 인권 및 예방교육 : (인권)34회 794명 / (예방)47회 2,541명
- 노인인식개선 등 홍보활동 : 58,461(언론매체, 홍보물 배포 등)

3) 「2021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계획, 어르신복지과」 추진실적 자료 재구성
- '20년 실적자료는 현재 보정 진행 중으로 일부 변동가능('21. 6월 최종확정 예정)

나.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운영 필요성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라 가족 간 갈등·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6년 1,117건에서 '20년 2,081건으로 5년간 964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구분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단위 : 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서울시	1,117	1,470	1,618	1,962	2,081

※ 2020년 신고접수 현황 자료는 현재 보정 진행 중으로 일부 변동가능(' 21. 6월 최종확정 예정)

- 2019년 기준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962건으로, 이는 1개소당 654건에 해당하며,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평균접수 473건 대비 38% 높은 노인학대 신고접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19년 기준 서울시는 타 시도보다 높은 신고접수건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개소당 평균접수 611건인 경기도의 경우는 2021년 1개소를 증설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남.

- 노인보호전문기관을 3개소 이상 운영 중인 타 시도의 경우를 살펴 보면 경기(4개, 노인인구 170만명), 강원(3개, 노인인구 31만명), 경북(3개, 노인인구 56만명)으로, 서울시 노인인구 147만명에 비해 서울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4)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1개소당 평균 접수건
		학대사례	일반사례	합계	
서울	3	534	1,428	1,962	654
부산	2	364	531	895	448
대구	2	224	666	890	445
인천	2	369	471	840	420
광주	1	235	336	571	571
대전	1	123	468	591	591
울산	1	102	338	440	440
경기	4	914	1,531	2,445	611
강원	3	365	744	1,109	370
충북	2	175	589	764	382
충남	2	258	448	706	353
전북	2	266	311	577	289
전남	2	337	518	855	428
경북	3	492	1,155	1,647	549
경남	2	339	774	1,113	557
제주	2	146	520	666	333
계	34	5,243	10,828	16,071	473

4) 출처 :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과 관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노인학대 사례에 대하여 신속하게 현장 조사 후 학대 피해 노인 및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 동 위탁사무의 특성상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노인 권익보호 사무에 대하여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종합 검토의견

- 노인 인구 증가 및 사회적 변화로 인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노인 학대 신고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방활동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증설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또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5)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류민국 입법조사관 (02-2180-8140)

-
-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